

# 사천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562호 2018. 07. 11.(수)

## 조례

- 시천시 조례 제1483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——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# 사천시 공보

제562호(2)

## 조례

사천시 조례 제1483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7월 11일

## 사천시장 송도근

###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”를 “업무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·결정을 위하여 「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 사천시공보

제562호(3)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,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회 심의·운영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 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 사천시공보

제562호(4)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